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전용기
이상식 · 황명선 · 이수진
강준현 · 한정애 · 문대림
서미화 · 오세희 · 전종덕
의원(12인)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희부지, 하천구역 내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도로 유희공간, 하천구역의 비탈면 및 제방,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의 기능과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에 발전수익을 환원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중 도로 유희공간,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의 안전성, 재해 예방, 유지·관리 및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 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주민참여형 사업, 지역사회 수익환원 사업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라. 사용료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 마. 지방자치단체가 공유 유희공간의 조사,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주민참여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의4 신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공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희공간
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및 그 밖에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 유희공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유희공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구조적 안전성
2. 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3.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
4.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
5.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
3.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

4.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5.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4(공유 유휴공간의 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본래의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에 지장이 없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 유휴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중인 공유재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0조의2(공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희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용허가할 수 있다.</u> <u>1.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비탈면, 녹지대, 방음벽, 옹벽 및 그 밖의 도로 유희공간</u> <u>2.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비탈면 및 그 밖에 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u> <u>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구거 및 그 주변 유희공간</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 중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유희공간</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u>

<신 설>

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구조적 안전성
2. 재해 예방 및 주민 안전
3.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공공적 이용
4.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및 안전성 검토
5.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용료의 감

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업
3. 지역주민이 출자하거나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 발전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당 지역의 주민 또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
5.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

<신 설>

면율, 감면기간 및 감면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
다.

제94조의4(공유 유희공간의 재생
에너지 활용 촉진) ①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본
래의 행정목적 또는 공공목적
에 지장이 없는 유희공간을 활
용하여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유 유희공간의
조사 및 정보 제공,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
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원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유희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
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